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9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주민의원)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통계
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재

해를 입은 노동자는 11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심각한 수준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함께, 최근 SPC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 연이어 벌어진 참사는 우리에게 산업안전의 냉혹한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음.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으나, 전문성·일관성·적시성 모두 부족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해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이러한 선진사례는 우리에게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

고자 함.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독·지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